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72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3. 8. 14.
- 다. 회부일 : 2023.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임.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외부자원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2) 위탁사무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등 운영지원 및 평가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지원
- 지역 현장조사, 외부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등

(3) 위탁기간 : 2024.1.1.~2026.12.31.(3년간)

※ 현 수탁법인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4) 위탁금액 : 327백만원('23년)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6)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책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운영 컨설팅 및 서울시와 현장의 중간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와 같은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함)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3.12.31.) 도래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제4조의3제1항¹⁾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지원
 -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지원
 -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 지원단은 2011년 1월에 최초 설치한 이후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자원 연계, 시설 평가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며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③~⑤ (생략)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 >

구분	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11.1.1.~’12.12.31.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개모집
2차	‘13.1.1.~’15.12.31.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개모집 (*시의회 동의)
3차	‘16.1.1.~’17.12.31.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재계약
4차	‘18.1.1.~’20.12.31.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개모집
5차	‘21.1.1.~’23.12.31.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재계약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조례」 제8조제1항²⁾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동일기관이 10년 이내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 사무에 대해 ‘20.9.15일자로 위탁기간(‘21.1.1.~’23.12.31)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난 뒤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공모)를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기관은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수탁기관이 2011년 최초 위탁 시부터 지금까지 사무를 수탁해 운영하고 있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동일 기관이 다시 재위탁하여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 바 있음.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자원연계 시설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단 운영은 같은 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⁴⁾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자원 연계,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시설평가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이를 포함한 가정 및 지역사회 욕구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단 운영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서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⁵⁾고 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됨.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지원단은 서울특별시 소재 42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조사, 평가 및 종사자 교육 지원 등 서울특별시와 현장의 중간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 최근 다문화 아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지역 내 돌봄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향후 수탁자를 모집공고함에 있어 경쟁력 있는 다양한 단체 또는 법인이 공개모집에 참가하고 경쟁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

5) [보건복지부지침]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개정) p.103

로그래밍 개발 등 해당 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 현 위탁기관(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은 2011년 지원단을 최초로 구성할 때부터 위탁업무를 연속해 수행하고 있는바, 금번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집행기관은 기존 위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